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70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재호(기소), 신종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정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항소심에서 E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



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저작권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대표 E) 사무실에서 2021. 3. 31.경부터 2021. 7. 21.경까지, 2021. 7. 25.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H, I, J 모두 누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E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사용법을 J에게 가르쳤고 J가 입사하기 전 이미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본다. E는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또는 핑계를 대기 위해 그와 같이 진술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E는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자로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증언은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지애 _____

 판사 정세진 _____

 판사 서수정 _____